

의료기사등의 실태 등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기 본 인 적 사 항	성명	성별 남/여	출생년도	면허번호
	직종 [] 임상병리사 [] 방사선사 [] 물리치료사 [] 작업치료사 [] 치과기사 [] 치과위생사 [] 보건의료정보관리사 [] 안경사			
	면허발급 연월일			E-mail
	주소			
	연락처	일반전화		휴대전화

취 업 상 황	활동 여부 ([] 정규, [] 비정규) 의료기관 근무 [] 비의료기관 근무 [] 미활동			
	의료기관 근무자	근무 의료기관 구분 [] 종합병원 [] 병원 [] 요양병원 [] 의원 [] 치과병원 [] 치과의원 [] 조산원 [] 보건의료원 [] 보건소 [] 보건지소 [] 한방병원 [] 한의원		
		근무 의료기관 명칭/주소		
	비의료기관 근무자	근무 기관 구분 ([] 개설, [] 취업)안경업소 ([] 개설, [] 취업)치과기공소 [] 연구소 [] 기업체 [] (준)정부기관 [] 학교 [] 자영업 ([] 노인, [] 장애인, [] 아동, [] 여성)사회복지시설 [] 기타()		
		근무 기관 명칭/주소		
미활동	미활동 사유 [] 출산·육아 [] 일시적 폐업·실직 [] 질병·사고 등 [] 해외체류 [] 기타()			
	향후 3년 안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[] / 복귀 의사 없음 []			

보 수 교 육 및 신 고 관 련	최근 신고 연도	
	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()시간 이수 의무 중 ()시간 이수	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회 귀하

첨 부 서 류	1. 보수교육 이수증(이수자만 첨부합니다.) 2.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서(해당자만 첨부합니다)
------------------	---

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- 가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: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
 - 나.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: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
2.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,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3.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"의료기관 근무자"란만, 그 외의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"비의료기관 근무자"란만 작성합니다.
4. "근무 의료기관 명칭"란 및 "근무 의료기관 주소"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,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.
5.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6.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7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